

『2023년 기술 스타트업 기술보호 예방 및 사업화 지원』 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

우수 기술 보유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술보호 예방 확대 및 임치 활성화를 촉진하는 『2023년 기술 스타트업 기술보호 예방 및 사업화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9월 8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우수 기술 보유 스타트업의 기술탈취 예방 방법, 정책지원 및 기술가치평가 지원을 통해 기술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 기회 마련

< 추진 배경 >

- ◆ 최근 'A사' 기술분쟁 이슈 등으로 벤처·스타트업의 기술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
- ◆ 기술보호 예방 전략 중 하나인 '기술자료 임치'는 개발자, 개발 시점 및 내용을 법적 분쟁시 추정 가능한 자료로 활용 가능
- ◆ 임치제도 도입 촉진을 위해 기술보호 컨설팅, 기술사업화 등을 연계해 기업 지원

- (지원 내용) ①기술보호 컨설팅, ②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료 지원, ③기술가치평가·투자유치 기회 제공을 통한 기술보호 역량 강화·스케일업 기반 마련

- (지원 규모) 우수 기술 보유 스타트업 총 50개사(신청시 유형 택1)

< 지원 규모 및 지원 내용 >

구 분		규모	지원 내용
①유형	기술보호 예방 * 기본형	40개사	(컨설팅 지원) 법률전문가 1:1컨설팅
			(보험료 지원) 기술보호 정책보험료 기업부담 지원
②유형	기술보호 예방 기술가치평가·IR지원	10개사	(컨설팅 지원) 법률전문가 1:1컨설팅
			(보험료 지원) 기술보호 정책보험료 기업부담 지원
			(기술가치평가·IR) 기술가치평가(투자유치용) 및 IR지원

2. 참여기업 모집

- (사 업 명) 2023년 기술 스타트업 기술보호 예방 및 사업화 지원
- (모집 대상) ①모집공고 이전 또는 ②모집공고 기간 내 기술자료 임치 계약(일반임치) 체결이 완료된 창업기업*

* 모집 공고 개시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기업

[관련근거] 창업기업은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에서 정의한 “개발인”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

기술자료임치제도 운용요령 제2조(정의)

1. “개발인”이란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른 기술자료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여 기술자료를 임치하는 법안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상생협력법」 제24조의2에 따른 임치기업을 포함한다)

* 해당 기술자료 임치계약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임치센터’에서 체결된 계약에 한함

<임치 수수료 참고>

* 1년 : 20만원 또는 2년 : 30만원(창업기업 할인 적용) / 5년 이상 : 45만원(장기임치 할인 적용)

☞ 기술자료임치센터 바로가기 <https://www.kescrow.or.kr>

- (지원 제외) ①휴·폐업 중인 기업, ②신청 기업(또는 대표자)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③기타 사업 공고와 미부합*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유흥·향락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영위기업

- (모집 분야) 12대 국가전략 기술

*①반도체·디스플레이, ②이차전지, ③첨단 모빌리티, ④차세대 원자력, ⑤첨단 바이오, ⑥우주항공 해양, ⑦수소, ⑧사이버보안, ⑨인공지능, ⑩차세대 통신, ⑪첨단로봇제조, ⑫양자

- (모집 규모) 총 50개사

①유형: 기술보호 예방(기본형) 40개사

②유형 기술보호 예방(기본형)+기술가치평가·IR지원 10개사

- (모집 기간) 2023년 9월 8일(금) ~ **2023년 10월 3일(화) (기간연장)**

* 상기 모집기간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3. 사업 추진절차

< 기술 스타트업 기술보호 예방 및 사업화 지원 절차 >

기술 스타트업 모집
(‘23. 9. 8~’23. 9. 22)



제출 서류 검토
~’23. 9. 27



지원기업 선정평가
~’23. 10월 1주



지원 기업
선정결과 안내
~’23. 10월 2주



기술보호 컨설팅 및
기술보호 정책보험료 지원
~’23. 10월 중



투자 유치용
기술가치 평가
~’23. 11월 말



투자유치 위한 IR 지원
~’23. 12월 중순

- 기술 스타트업 대상 '기술보호 예방 및 사업화 지원' 모집 개시

* 이메일(escrow@win-win.or.kr) 제출 통해 지원사업 신청

- 지원사업 신청기업 제출 서류 검토

- 전문가 평가위원회* 개최·운영 통해 지원기업 선정 평가 진행

* 기술보호 관련 전문가(협력재단, 기술보증기금 등)

- 지원 기업 선정결과 안내

* 기술보호 예방(기본형) 40개사, 기술보호 예방(기본형) + 기술가치평가·IR지원(10개사)

- (컨설팅) 법률, 재무 등 관련 전문가 및 지원 기업간 1:1 매칭 통해 기술보호 관련 컨설팅 제공

- (보험료 지원)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가입 보험료 中 기업 부담 금액 지원

- 투자 유치 기회 제공(IR 지원)을 위한 지원기업 보유 기술가치 평가(투자유치용) 지원

* 기술가치평가 위해 제출 서류 기반 별도 사전 평가 시행

- 벤처캐피탈(VC)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평가 진행
- 지원기업 IR 발표 및 평가위원 피드백으로 구성

* 상기 사업 추진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4. 선정 기업 지원 내용

- (기술보호 컨설팅) 선정 기업(50개사) 대상으로 기술보호 관련 법률, 재무 분야 등의 전문가 1:1 매칭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강화 지원
 - (법 른)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외부관계 쟁점 계약관계 체결, 내부 관계 쟁점 기술자료(대기업과의 송무에서 쟁점) 등 맞춤형 컨설팅 제공
 - (기술보호) 선정 기업이 제출한 기술보호 수준 자가진단* 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의 기술 보안 수준 분석 및 솔루션 제안
 - * (기술보호 수준 자가진단) 중소기업 보유 기술에 대한 자율적 점검 통해 기술보호 수준 진단 및 개선지원(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에서 온라인 진단)
 - ☞ (자가진단하러 가기) <https://www.ultari.go.kr>
 - (재 무) 중소기업의 외부 투자 유치 대응 관련 지분 비율 책정 등 중소기업 재무 컨설팅 지원

< 중소기업-전문가 1:1 매칭 통한 컨설팅(안) >

컨설팅 분야	컨설팅 기대효과
법 른	중소기업 기술탈취·유출 관련 선제적 대응 역량 제고
기술보호	기술보호 수준 파악 및 개선 기회 제공
재 무	외부 투자 유치 시, 안정적 재무구조 기대

- (기술보호 정책보험료 지원)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기술분쟁 대응 관련 재정부담 완화

※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이란?

보험기간 내 발생한 기업의 기술(보험목적물)과 관련한 분쟁과정에서 소요된 법률 비용을 보장금액(보험금) 내에서 보험금으로 보상하여 기업의 적극적 분쟁대응 유도

- (지원내용) 기술보호 정책보험 상품 중 '피소대응(기본 - 단기 1년)'에 한하여 기업부담 가입보험료 전액 추가 지원

* 기본 정부지원(70%~) + 기업부담금(~30%) 추가 지원

< 상품 내용 >

피소대응(기본)	보험가입자 보험목적물에 대해 제3자가 제기한 법률분쟁 (국내법원) 대응 법률비용 보상
보장금액 및 기간	(보장금액) 3천만원 또는 5천만원 (보험기간) 1년 * 보험금의 10% 보험가입자 부담

- 보험목적물은 가입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보험기간 내 유효한 특정된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임치기술) 중 최대 3개

구분	내용	구분	내용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특허청 출원심사 통해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임치기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內 임치한 기술자료

- **(기술가치평가 지원)** 투자유치 기회(IR)를 제공받는 지원 기업(10개사)을 대상으로 투자유치용 기술가치평가 지원

- 지원기업 보유 '임치 기술자료'에 대한 정성적·정량적 평가를 통해 외부 투자유치 기반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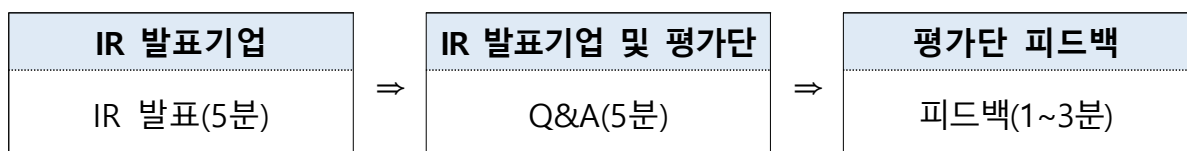
* 기술가치평가모형(기술보증기금)을 활용한 기술성, 시장성 등을 평가(지원 '유형②' 신청 시, 기술사업계획서 등 평가 관련 자료 제출 필요)

- **(투자 기회 제공)** 지원기업에게 IR 무대 제공을 통해 중소기업 외부 투자의 장 마련

- 벤처캐피탈(VC) 관계자, 기술 스타트업 육성 관련 전문가(대기업·공공기관 오픈이노베이션 담당)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 진행

* 지원기업의 IR 발표, Q&A, 평가단의 피드백으로 IR운영

< 투자 기회 제공을 위한 IR구성(안) >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3년 9월 8일(금) ~ 2023년 10월 3일(화) (기간연장)

* 사업 신청기간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신청방법) 제출서류 스캔본 이메일(escrow@win-win.or.kr) 제출

* 기술자료 임치 신규계약은 기술자료임치센터에서 바로 신청접수 및 가입완료 가능

** <https://www.kescrow.or.kr> , ☎ 02-368-8484

☐ (제출서류) 지원유형에 따라 제출 서류 상이

* 지원유형①(기술보호 예방 기본형) / 지원유형②(지원유형① + 기술가치평가IR지원)

< 지원유형 별 제출서류 >

구분	지원유형		비고
	지원유형①	지원유형②	
①	기술자료 임치증서		공통
②	『기술 스타트업 기술보호 예방 및 사업화 지원』 신청서(붙임2)		
③	사업자등록증 및 중소기업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각 1부씩		
④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완납, 신청일 현재 유효기간 미경과 필요)		
⑤	'기술보호 수준 자가진단 결과확인' 엑셀자료 출력물		
⑥	매출액 증빙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 or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⑦	개인·기업(신용)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붙임1)		
⑧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관련 서류(붙임3-1 ~ 3-2)		
⑨	기술가치평가(투자유치용) 지원 관련 서류(붙임4)		지원유형② 한정

* (⑨번) 임치기술 기술가치평가 기술사업계획서(기술사업계획, 기술개발현황 등)

** 모든 서류는 제출 이후 보완 및 교체 불가 / 제출서류 누락 및 허위자료 제출시 신청접수·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6. 문의처

☐ (문의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임치운영부

○ 이원희 차장(02-368-8930), 한범진 사원(02-368-8728)

○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이유진 과장(02-368-8795)

☐ (홈페이지) 기술자료임치센터 홈페이지

붙임1

개인·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기술스타트업 기술보호 예방 및 사업화지원사업”과 이 사업 세부 지원 사업(1:1컨설팅, 중소기업 기술정책 보험, 기술가치평가 등)을 포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 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개인·법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동 사업 신청기업의 선정 및 관리 ▶ 지원 이력 관리, 정책자료로 활용, 만족도 및 성과조사·분석, 기술보호 실태조사 ▶ 동 사업 제도변경 통지,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의 지원 이력 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수집·이용할 항목	▶ 기업식별정보 : 기업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주요 생산품,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등 신청서 기재사항 ▶ 개인식별정보 : 업무 담당자의 성명, 연락처(유선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지원이력정보 : 신청일·지원금액 등 사업 신청 및 수혜정보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기업(신용)정보는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년간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위 개인·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정보에 대한 이용·제공 동의를 거부할 경우 동 사업의 참여가 불가합니다.
개인·기업(신용) 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u>개인·기업(신용)정보</u>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제3자 조회·제공에 관한 사항

조회·제공받는 자	▶ 신용조회 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 기술보호 정책보험 수행보험사 : 삼성화재해상보험(주), 디비손해보험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주)케이비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주) ▶ 기술가치평가기관 : 기술보증기금
조회·제공받는 자의 목적	▶ 신용조회 회사 : 사업 지원요건 충족여부 판단 및 정책자료로 활용 ▶ 기술보호 정책보험 상품의 가입안내 ▶ 기술가치평가에 필요한 관련 세부내용
조회·제공할 개인·기업(신용) 정보의 항목	▶ 종합신용정보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에 제공되는 기업의 신용평가 정보 조회 · 신용거래능력정보 : 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 기타 신용정보 : 국세 등 채납정보, 사회보험료 관련정보 등 ▶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식별정보 : 기업명,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기술보호 정책보험 수행보험사에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정보 · 기업식별정보 : 기업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주요 생산품,

	근로자수,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등 신청서 기재사항 · 개인식별정보 : 업무 담당자의 성명, 연락처(유선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제공받는 자의 개인·기업(신용) 정보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기업(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위 개인·기업(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 시 동 사업의 참여가 불가합니다.
개인·기업(신용) 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u>개인·기업(신용)정보</u> 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SIMS) 정보 활용에 관한 사항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목적	▶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 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 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시점 : 신청·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20 년 월 일

■ 업 체 명 :	■ 업무 담당자 성명 (서명/인)
■ 대표자(본인)성명 : (서명/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귀중

붙임2
기술 스타트업 기술보호 예방 및 사업화 지원 신청서

신청기업 정보		신청자 정보	
기업명 /대표자명		성명/직급	
사업자번호		휴대폰/e-mail	
업종		창업일	
주요제품		매출액 (‘22.12기준)	
핵심기술		투자처(금액)	
임치여부	☐ 신규 ☐ 기존임치		
기술분야	☐ 반도체·디스플레이 / ☐ 이차전지 / ☐ 첨단 모빌리티 / ☐ 차세대 원자력 ☐ 첨단 바이오 / ☐ 우주항공·해양 / ☐ 수소 / ☐ 사이버보안 / ☐ 인공지능 ☐ 차세대통신 / ☐ 첨단로봇·제조 / ☐ 양자		
참여중인 사업	☐ 초격차 / ☐ 유니콘 / ☐ CES / ☐ 틱스 / ☐ 기타()		
유형별 신청 (택1)	☐ (유형 ①) 기술보호 예방 기본형(1:1컨설팅, 정책보험)		
	☐ (유형 ②) 기술보호 예방 기본형(1:1컨설팅, 정책보험) + 기술가치평가(투자유치용) + IR * (참고1) 기술가치평가(투자유치용) 비용 15백만원 전액 지원 (VAT 기업부담) ** (참고2) 기술가치평가 금액은 신청기업의 희망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기술보호수준 자가진단 결과	☐ 우수 ☐ 양호 ☐ 보통 ☐ 취약 ☐ 위험 / 해당 결과에 체크 *(기술보호올타리 홈페이지 접속 후 기술보호수준 결과 엑셀자료 제출)		
신청경로	☐ 기술자료임치센터 ☐ 정부안내 ☐ 기업인추천 ☐ 기타()		
상기 내용과 같이 임치제도를 활용한 기술스타트업 맞춤형 정책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명 : 신청기업 대표자 : (서명/인)			
대 · 중소기업 · 농어업협력재단 귀중			

☐ 사업아이템 개요 (임치된 기술이므로 공개 가능한 내용만 작성)

사업 아이템 소개	· ※ 핵심기능, 소비자층, 사용처 등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기재
경쟁제품 분석	· ※ 경쟁제품(유사제품)의 주요기능 및 차별점 등을 간략히 기재
국내외 목표시장	· 국내 : · 해외 : ※ 국내 외 목표시장, 판매 전략 등을 간략히 기재

☐ 보유역량

○ 대표자 주요경력

기 간	근무처 명	최종 직위	주요 담당업무
~			

○ 직원 현황

성 명	직 급	주요 담당업무	학력 및 경력
	대표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지식재산권명	내용	유효기간	비고

☐ 정책보험 가입 신청정보

가입상품	☒ 주보험(필수)	- 보험목적물과 관련 타사(타인)으로부터 피소됨에 따라 이를 방어하기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법률비용 (보상한도 : ☐ 3천만원 ☐ 5천만원)
보험목적물 (최대 3개)	☐ 특허 ☐ 실용신안 ☐ 암차기술 ☐ 디자인	(등록번호 :)
	☐ 특허 ☐ 실용신안 ☐ 암차기술 ☐ 디자인	(등록번호 :)
	☐ 특허 ☐ 실용신안 ☐ 암차기술 ☐ 디자인	(등록번호 :)
할인대상여부	☐ 보험목적물 관련 무사고(5년이상) 기업(10%)	
보험료 추가지원 대상 여부	☐ 창업 5년 이내 기업(3%) ☐ 기술보호 선도기업/인증 지정(3%) ☐ 이노비즈(Inno-biz) 인증기업(3%) ☐ 메인비즈(Main-biz) 인증기업(3%) ☐ 벤처기업 인증기업(3%) ☐ 대기업·공공기관 추천기업(3%) ☐ 비밀유지서약(1%) ☐ 경업금지약정(2%)	

■ 첨부서류

1. 보험가입 목적물 증명서류* 사본 1부
* 특허증, 기술자료임치증, 실용실안등록증, 디자인등록증
2. 보험료 추가지원 증명서(해당기업에 한함) 사본 1부

년 월 일

신청기업명 :
신청기업 대표자 : (서명/인)

대 · 중소기업 · 농어업협력재단 귀중

당사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에 참여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동의합니다.

1 자료제출 위반에 의한 환급 동의

-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에 의하여 정부지원금 지급 이후, 지원 신청 시 제출한 **증명자료가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향후 3년간 신청·가입이 제한되며**, 정부지원 금액의 **300%**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다시 **환급**할 것을 동의

☐ 동의함

2 중도해지에 의한 정부지원금 환급 동의

-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에 의하여 정부지원금 수혜 이후, 수혜기업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험 보장기간 만료 전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험사로부터 환급 받은 보험료 중 정부지원금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다시 **환급**할 것을 동의

☐ 동의함

3 보험관련 자료 제공 동의

-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에 의하여 정부지원금 수혜 이후,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보험료 현황, 보험사고 현황, 보험금 지급현황, 손해사정자료 등)를 중소벤처기업부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사업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공하는 것에 동의

☐ 동의함

- 또한 국회 또는 감사원에서 감사목적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업정보(기업명, 연락처, 지원 내용 등)**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

☐ 동의함

상기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명 :

신청기업 대표자 : (서명/인)

대 · 중소기업 · 농어업협력재단 귀중

접수일	2023년	월	일
-----	-------	---	---

기술 사업 계획서

기 술 명

◆ 평가종류

평 가 종 류	세 부 신 청 내 용
☐ 기술가치평가	☐ 투자참고용 임치기술 가치평가용

상기와 같이 투자참고용 임치기술 가치평가 지원사업에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기 업 체 명 : (인)

기술 보유자 : (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귀중

작성자성명		직위		연락처 (TEL)		C.P)		E-mail	
-------	--	----	--	-----------	--	------	--	--------	--

공지 사항

- 본 기술사업계획서는 기술가치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기술 사업 계획

1. 기술사업 개요

기술명					개발 방법	☐ 단독 ☐ 공동	
개발(예정)기간	년 월 ~ 년 월	개발소요자금	백만원		제품화여부	☐ 여 ☐ 부	
권 리 구 분	☐ 임치기술 (기술상 정보)		임치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상 정보형태	☐ 생산·제조방법 ☐ 시설·제품설계도 및 매뉴얼 ☐ 물질 배합 비율·성분표 ☐ 연구개발보고서 및 관련 각종 데이터 ☐ SW 소스코드·데이터 및 디지털 콘텐츠 ☐ 기타		제 품 화 단 계	☐ 양산(시장판매·사업화포함)단계 ☐ 양산(시장판매·사업화포함)준비단계 ☐ 제품화(상품화·제작포함)완료단계 ☐ 시제품(연구·개발·기획)단계			
임치계약번호			임치계약 기간				
권 리 자	성명		생년월일			관계	
발 명 자	성명		생년월일			관계	
작성 요령	▶ 개발소요자금 : 개발기간중 기투입된 자금과 향후 투입될 자금을 포함한 총개발자금을 기재 ▶ 발명자 : 권리자와 동일한 경우 기재 생략						

2. 기술(제품)의 내용(작성할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추가 작성 가능)

주요기술내용	(제품의 특성 및 핵심기술, 기술개발내용 및 과정 등)
작성 요령	▶ 주요기술내용 : 제품특성·핵심기술내용, 기술개발과정 및 대체·경쟁제품(상품 및 서비스)과의 차별성 기재

시장상황		(경쟁상황, 시장안정성, 주요수요처, 유사 제품 및 경쟁업체 현황 등)			
연도별		전전년도	전년도	신청년도(예상)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상장기업명
시장	국내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규모	해외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관련 근거 또는 출처 :					
기술(품질) 및 기술경쟁력		(국내 경쟁사 제품 및 국외 경쟁사 제품과의 품질, 기술, 가격 비교 등)			

사업화 추진계획

(개발완료 및 제품화시기, 설비도입, 양산착수, 판매 등의 계획)

추정 요약 손익계산(신청기술사업)

(사업화 5개년도 추정 매출액)

구 분	직전년도 (년)	1차년도 (년)	2차년도 (년)	3차년도 (년)	4차년도 (년)	5차년도 (년)
매출액						
<추정근기>	(년도별 매출액 추정 근기를 구체적으로 기술)					

II. 기 술 개 발 현 황

1. 기술개발 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입사년월		H·P	
학력 및 주요 경력	부 터	까 지	학교명 / 근무처		전공분야 / 최종직책		
보유 자격증 및 수상경력 등							
작성요령 ▶ 대표자, 공동대표자, 실제경영자가 개발책임자인 경우 해당인의 성명만 기재							

2. 기술개발 전담조직 및 인력현황

전담조직	☐ 기업부설연구소(산업기술진흥협회등록) ☐ 기술개발전담부서(산업기술진흥협회등록) ☐ 기술개발연구실(기업자체운용)						
담당분야	직 위	성 명	연령	최종 학교 및 전공	입사년월	보유자격증	해당 기술분야 근무년수
작성요령 ▶ 담당분야 : 참여연구원의 연구개발내용 중심으로 표시(예: 책임자, 설계요원, 가공요원 등)							

3. 기술개발 실적

(단위:백만원)

개발실적 (최근 3년 이내)	개발과제 및 내용		개발기간	개발수준	개발비용	매출규모	수상/취득권리/인증
기술권리 보유현황	구분	등록번호(출원번호)	기술의 명칭				
	특허(국내)	제00-000000호					
	특허(해외)						
	임치기술	2020-00-00-0000					
	품질(규격) 표시						
	인허가	의료기기 인증 제000호					
작성 요령	▶ 개발수준 : 시제품제작 단계 또는 제품양산 여부에 따라 “시제품” 또는 “양산”으로 기재 ▶ 수상/취득권리/인증 : IR52장영실상, 지식경제부 10대신기술상, NET/NEP, 정부 R&D개발성공판정 여부 등 기재 ▶ 기술권리보유현황 : 현재 생산중이거나 향후 생산계획이 있는 제품과 관련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권, 디자인, 상표권, 규격표시허가(KS등), 기술제휴 등의 건수 및 내용 기재(출원중인 경우 구분 표시) ▶ 각종인허가 : 영업을 위해 획득한 각종 인가, 허가, 면허증의 종류 및 허가번호 등을 기재						

III. 기 업 경 영 현 황

기업체명 (영문)				대표자 (영문)		E-mail(대표자)				
						Homepage				
사업장	본사여부	주소			사업자번호	소유 여부	소유/임차	연락처	전화번호(Fax)	
	☐	1)								
	☐	2) 외 개								
상시근로자		당기 평균 : 명 (사무직 : 명, 기술직 : 명, 기능직 : 명, 기타 : 명) 최근 월말 : 명								
업종분류		(분류기호:)								
주요제품 (상품, 용역)					용도 및 특성					
주요원재료										
상장구분		거래소() 코스닥() 제3시장()		기업형태	등록() 벤처기업() 외감() 외국인투자() 전문경영인()					
작성요령	▶ 사업장 : 규모순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을 기재(3개 초과시 마지막주소 말미에 “외 ○개” 기재)									
	▶ 본사 : 법인기업은 법인등기기부등본상의 본점소재지,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소재지 기재 ※공무상 소재지가 실제와 상이한 경우 함께 기재:[예시] 공부:사하구 장림동 469-3, 실제:사하 신평 474]									
	▶ 상시근로자 : 당해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대표자·이사, 감사 및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일용근로자,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제외)									
	○ 당기평균 : 전년도 매월말일 현재(급여대장 등 인원)의 근로자를 합하여 월로 나눈 인원									
	○ 최근월말 : 최근월말현재 상시근로자를 기재함(년도중 창업한 기업은 최근월말 인원만 기재)									
	▶ 주요제품 : 기존 생산(판매)제품·상품(서비스)이 있는 경우 품목기재(창업후 기술개발중인 경우 예정품목 기재)									

연	월	연혁 (설립, 증자, 대표자·상호·업종 변경, 공장신축, 이전 등)

기 간 제품, 상품		전 전 기		전 기		당 기	
		~		~		~	
계(수출실적)		(천불)		(천불)		(천불)	
작성 요령	▶ 당기 : 결산확정 여부에 불구, 평가신청일의 직전회계년도(기중에 영업이 개시된 경우 동 기간을 표시)						
	(예시1) 설립:1997. 9. 3. 평가신청:2000. 3. 3.		⇨	1997. 9. 3 - 1997. 12. 31	1998. 1. 1 - 1998. 12. 31	1999. 1. 1 - 1999. 12. 31	
	(예시2) 설립:1999. 7. 8. 평가신청:2000. 3. 3.		⇨			1999. 7. 8 - 1999. 12. 31	
	▶ 제품별 비율 큰 순서대로 기재(상품매출·용역수입이 있을 경우 구분기재) 및 제품별 구분 곤란시 합산 기재가능(품목별 매출실적의 합계액은 손익계산서의 순매출액과 일치하여야 함)						
▶ 수출실적에는 외화금액(US\$)만 기재하되, 원화는 합계에 포함 기재							

4. 대표자 등(1.대표자(),2.공동대표자(),3.실제경영자등())

(단위:백만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동업계종사기간	년 개월			5년 이내 상환 (기업, 대표자)	회		
경영형태	창업() 2세승계() 인수() 전문경영인()				자격증		
최종학력	년도 월		학교		과 졸업		
주요경력	기간		근무처		업종	담당업무	최종직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작성요령	▶ 공동대표자, 실제경영자 등이 있을 경우 해당내역에 “○”표시하고 서식복사하여 별지로 추가작성 ○ 실제경영자 : 형식상의 직위, 직책, 주식지분 등에 불구하고 임원에 업무지시 등 사실상의 경영권을 가진 자 ▶ 동업계종사기간: 동사포함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범위내 동일업종 실제 근무년수(대표자로서가 아닌 경우 포함) ▶ 5년 이내 상환 : 국가·지자체, 공공단체로부터 5년 이내 기업 및 대표자의 상환법에 의한 훈·포장의 서훈사실 ▶ 학력 : 특수대학원 등 교육과학기술부 인정 정규학력 이외 과정은 입력제외 ▶ 주요경력 : 최근경력부터 순차적으로 기재 ○ 업종은 구체적으로 표시[(예시) S/W개발업, 유압프레스제조업, 전선제조업, 아동복제조업 등]						

5. 경영진 및 주주현황

● 경영진현황

직위	성명	담당업무	생년월일	경영실권자 또는 대표자와의 관계	근속년수	최종학교	주요경력

● 주주현황

(단위:백만원)

주주명	경영실권자 또는 대표자와의 관계	소유주식금액	점유비(%)	주주명	경영실권자 또는 대표자와의 관계	소유주식금액	점유비(%)
				계			
				주가(현재)	시가 :	원 / 액면가:	원

작성요령	▶ 법인기업 : 최근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해 대표이사(수인인 경우 전부기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기재 실제경영자가 있을 경우 실제경영자와의 관계만을 기재(예시 : 처, 형, 제, 처남 등) ○ 등기된 임원이 아니더라도 관리, 기획, 재무, 마케팅 분야 담당 핵심인력을 포함하여 기재 ○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단순주주의 경우 직위·담당업무는 기재생략 및 주요경력란에 “비상근” 기재 ▶ 개인기업 : 대표자(수인인 경우 전부 기재), 실제경영자에 대하여 직위등을 확인 기재 ○ 근속연수는 동사에서 근무한 연수를 기재 ○ 관리, 기획, 재무, 마케팅 분야 담당 핵심인력을 포함하여 기재 ▶ 소유주식금액(법인기업만 작성) : 기술사업계획서 작성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주주(단, 거래소, 코스닥, 제3시장 상장기업은 당기말 기준) 및 점유비를 기재(주주수가 난을 초과할 때는 “기타 ○명”으로 기재) ○ 시가·액면가 : 상장기업(거래소, 코스닥, 제3시장)의 경우 기준일 현재 종가와 액면가를 기재